

1. 개정 이유

지적측량은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범위를 결정하는 측량으로서 통일된 측량기준과 처리방법 및 절차를 법령으로 정하여 운영 중인 바, 위성측량·드론측량·전자평판 등 기술의 발달에 따라 등장한 새로운 측량방법 등을 측량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측량 기준과 처리방법 및 절차를 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기술용어에 대한 정의 및 한자용어 등을 정비하고 해석상 혼란이 우려되는 자구를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지적측량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적측량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지점”이란 기초측량에서는 국가기준점 또는 지적기준점을 말하고, 세부측량에서는 지적기준점 또는 지적도·임야도상 필지를 구획하는 경계점과 상호 부합되는 지상의 경계점을 말한다.
2. “망평균계산법”이란 지적삼각망을 활용하여 구하려는 지적삼각점 위치를 구하는 계산방법을 말한다.
3. “배각법”이란 하나의 각을 2회 이상 반복 관측하여 누적된 값을 평균하는 관측방법을 말한다.
4. “방위각법”이란 자오선의 북을 기준으로 시계방향으로 각 측선까지 이루는 각을 직접 관측하는 방법을 말한다.
5. “도선법”이란 기지점에서 출발하여 각 변의 방향과 거리를 순차적으로 관측하고 기지점에 도착하도록 하여 측점의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6. “다각망도선법”이란 여러 개의 도선을 결합한 형태로 구성하여 각 도선에서 발생한 오차를 상호관련이 있는 도선과의 관계를 종합하여

오차를 소거시키는 방법을 말한다.

7. “교회법”이란 기지점에서 미지점의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방향선의 교차로 점의 위치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8. “방사법”이란 구하려는 지상의 점들이 모두 보이는 위치 또는 기지점에 측판을 설치하고 구하려는 지상의 점을 거리와 각을 관측하여 위치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3호 본문 중 “평균 50미터 이상 300미터”를 “500미터”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위성측량방법을 통하여 지적도근점표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점간거리를 제한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조제1호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약도”를 “약도 또는 근경·원경 사진(항공영상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4. 자오선수차(평면직교좌표계에서 진북과 도북의 차이를 말한다)

제5조제1항 중 “정하는”을 “정하거나 경계와 면적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진측량 및 위성측량”을 “사진측량, 위성측량 및 드론측량”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중 “평판측량방법,”을 “평판측량방법, 전자평판측량방법,”으로, “전자평판측량방법”을 “드론측량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성측량”을 “위성측량 및 드론측량”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특별시·광역시·도”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지적삼각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1. 유심다각망(기지 2점간의 거리와 방위각을 기준으로 오각형 이상의 폐다각형을 형성하여 삼각형의 계산을 하도록 설치하는 방법을 말한다)
2. 삼입망(기지 2변을 기준으로 하여 미지점을 설치하는 방법을 말한다)
3. 사각망(기지 2점간의 거리와 방위각을 기준으로 사각형의 폐다각형을 형성하여 삼각형의 계산을 하도록 설치하는 방법을 말한다)
4. 삼각쇄(삼각형이 단열로 연이어진 삼각망을 말한다)
5. 삼변이상의 망(각이 아닌 거리측정을 통하여 위치를 구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9조제2항제3호 중 “기지각”을 “기지각(기지점 간의 각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鉛直角)”을 “(기준선이 수평선과 이루는 각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전단 중 “기지점(既知點)에서 소구점(所求點)”을 “기지점에서 소구점(기지점을 기준으로 위치를 구하고자 하는 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배각법에 따르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측선장(測線長)에 반비례하여 각 측선의 관측각에 배분할 것

$$K = -\frac{e}{R} \times r$$

(K는 각 측선에 배분할 초단위의 각도, e는 초단위의 오차, R은 폐색변을 포함한 각 측선장의 반수의 총합계, r은 각 측선장의 반수. 이 경우 반수는 측선장 1미터에 대하여 1천을 기준으로 한 수를 말한다)

제17조의 제목 “(측량준비 파일의 작성)”을 “(측량준비도 및 측량준비파일의 작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8조제1항에 따라 평판측량방법으로”를 “지적측량수행자가”로, “포함한”을 “포함한 측량준비도 또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지적측량수행자가 도시·군관리계획선을 측량하는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선이 포함된 측량준비파일을 작성하여 시·군·구 도시계획부서 담당자의 서명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소관청에 측량준비파일 작성에 필요한 지적전산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중 “세부측량의 기준이 되는”을 “세부측량을 하려는 위치에”로, “부족한”을 “없거나 사용이 어려운”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현형법(現形法)·도상원호(圖上圓弧)교회법·지상원호(地上圓弧)교회법

회법 또는 거리비교확인법 등”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하며, 같은 호에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현형법(지적공부에 등록된 현황과 지상의 현황을 대조하여 비교적 변형이 되지 않은 토지경계선을 임의의 측점에서 측정한 후 도상경계와 지상경계의 부합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말한다)

나. 지상원호교회법(도상의 3개 기지점에서부터 측량대상 지점까지 거리를 측정하여 측정된 기지점까지의 거리를 반지름으로 지상에 원호(圓弧)를 그려 교차점을 생성하여 확인하는 방법을 말한다)

다. 도상원호교회법(지상원호교회법과 반대로 지상의 거리를 이용하여 도상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원호(圓弧)를 교차시켜 지상점과 동일한 도상점을 찾아 확인하는 방법을 말한다)

라. 거리비교확인법(도상경계선과 지상경계선과의 거리를 비교하여 위치를 확인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18조제9항제3호 후단 중 “중앙종거(中央縱距)의”를 “중앙종거(측선으로부터 원주상의 점과 직각으로 만나는 거리를 말한다)”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면적측정의 대상) 세부측량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여야 한다.

1. 지적공부의 복구·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 및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2. 법 제84조에 따라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하는 경우

3. 지적확정측량을 하는 경우

4. 지적현황측량에 면적측정이 수반되는 경우

제20조제1항제2호 중 “산출면적”을 “측정면적”으로, “계산하여 10분의 1 제곱미터”를 “측정하고, 산출면적은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경위의측량방법: 100분의 1제곱미터

나. 전자평판측량방법: 10분의 1제곱미터

제20조제2항제2호 중 “계산하여”를 “측정하고, 산출면적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면적”을 “제2항에 따라 면적”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사업계획도와 도면을”을 “사업계획도 또는 설계도면 등 토지개발사업계획도와 지적공부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6조제1항의 기준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을 “지적확정측량”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본문 중 “규칙 제60조제2항”을 “규칙 제60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경계복원측량을 할 때에는 기존의 지적측량 결과에 따라 작성된 측정점위치설명도에 표시된 경계점과 현장에 표시한 경계점과의 부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제25조제1호 중 “지상건축물”을 “지상건축물 및 구조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된 계획선, 인가·허가를 받은 분할 또는 등록전환 예정선 및 토지개발사업·사회간접자본건설 등의 사업계획도상의 계획선에 대한 지적현황측량은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할 것

제26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해당 필지 및 인접 필지에 대한 측량연혁

제26조제2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해당 필지 및 인접 필지에 대한 측량연혁

제27조제1항제1호 중 “0.20미터”를 “±20센티미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0.25미터”를 “±25센티미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0.15미터”를 “±15센티미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0.25미터”를 “±25센티미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가목 중 “0.10미터”를 “±10센티미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10분의 3M밀리미터”를 “±100분의 3M센티미터(단, 전자평판 측량방법에 의한 경우 ±100분의 2M센티미터)”로 한다.

제28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지적측량수행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9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적측량성과 검사 및 측량민원 조사를 위하여 지적소관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필지의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현황측량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별지 제35호서식의 앞쪽 및 별지 제40호서식부터 별지 제42호서식까지

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적측량성과의 결정에 관한 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전에 지적측량성과의 검사성과의 연결교차 허용범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지적삼각보조(도근)점 성과표

지적삼각보조 (도근)점 번호	번	도선등급	등	도선명	도선	표지재질	
토 지 소 재	시 군 구	읍 면 리	동	번지	지적(임야)도		호
설치 및 재설치 연월일	좌 표				경 위 도		
	X		Y		B		L
년 월 일	m .		m .		° ' "		° ' "
년 월 일	m .		m .		° ' "		° ' "
년 월 일	m .		m .		° ' "		° ' "
원점			표고		m .		
약도 또는 위치 사진(지적삼각보조(도근)점의 위치를 근·원경 또는 항공영상 첨부)							
위치 약도				근·원경 또는 항공영상			
조사연월일	조 사 자			조 사 내 용			
	직	성 명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40호서식]

시 읍 1 00 군 구 면 적 측 정 부 면 측척											
동리명	지 번	측정 방법	회수 또는 산출수		측정면적	도곽신축 보정계수	보정 면적	원면적	산출 면적	결정 면적	비 고
			제 1 회	제 2 회							
					m'		m'	m'	m'	m'	측정일자: 년 월 일 소 속: 측 정 자: 지적 사 (서명 또는 인) 검사일자: 년 월 일 검 사 자: 지적 사 (서명 또는 인)

420mm×297mm(보존용지(1종) 70g/m²

※ [도곽신축보정계수] 및 [보정면적] 란은 지적도면전산화 이전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이용하여 측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지적측량 결과부

토지소재	
지 번	
측량종목	

법인 또는 상호명

○○측량 성과도

토지소재	시 군 구	읍 면	동 리	번지 외 필지	측 척		용도 지역																
측 량 자	년 월 일			검 사 자	년 월 일																		
	자격등급 또는 기술등급 ○○○ (인)				자격등급 또는 기술등급 ○○○ (인)																		
<table border="1" style="width: 20%;"> <tr> <th>지번</th> <th>지목</th> <th>면적(m²)</th> </tr> <tr><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r> </table> ○○ 측량결과도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년 월 일 ○○ 시 장 군 수 [인] 구청장									지번	지목	면적(m ²)												
지번	지목	면적(m ²)																					
비 고	※필지수가 많은 경우에는 지번·지목 및 면적을 조서로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측정점의 위치 현황도

전경 현황(사진)	
① 측정점 또는 경계점표지의 위치(사진)	② 측정점 또는 경계점표지 위치(사진)
③ 측정점 또는 경계점표지 위치(사진)	④ 측정점 또는 경계점표지 위치(사진)

* 측정점 또는 경계점표지의 위치 사진의 일부를 참고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 고 도

토지소재	
	방위

[유의사항] 이 도면은 신청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축소 또는 확대한 참고용 도면으로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토지 공시현황

토 지 소 재			지 번	지 목	면 적(m ²)								
시·군·구	읍·면	동·리											
개별공시지가(원/m²): 개별주택가격(원): (기준일: ○○년 ○월) (기준일: ○○년 ○월) 「토지이용계획 현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rowspan="2" style="width: 20%;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지역·지구 등 지정 여부</td> <td style="width: 30%; padding: 5px;">「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td> <td style="width: 50%;"></td> </tr> <tr> <td style="padding: 5px;">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 등</td> <td></td> </tr> <tr> <td colspan="2" style="padding: 5px;">「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td> <td></td> </tr> </table>						지역·지구 등 지정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 등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지역·지구 등 지정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 등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유의사항] 여기에 적힌 사항은 참고사항이며,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에 방문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의 공적증명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적측량 수행자

성명:	성명:	성명:
직위(직급):	직위(직급):	직위(직급):

사무실 약도

사무실 주소	
사무실 전화번호	

교부번호: 제 호

지적(경계복원 · 현황)측량 결과부

토지소재	
지 번	
측량종목	

법인 또는 상호명

지적(경계복원·현황)측량 성과도

토지소재	시 읍 동 군 번지 필지 구 면 리	측 척																					
측 량 자	년 월 일	측량성과도	년 월 일																				
	자격등급 또는 기술등급 000 (인)	작 성 자	자격등급 또는 기술등급 000 (인)																				
현황표시 <table><tr><td>범 례</td><td>명 칭</td></tr><tr><td></td><td></td></tr><tr><td></td><td></td></tr><tr><td></td><td></td></tr><tr><td></td><td></td></tr></table> 면적표시 <table><tr><td>지번·부호</td><td>면적(m²)</td></tr><tr><td></td><td></td></tr><tr><td></td><td></td></tr><tr><td></td><td></td></tr><tr><td></td><td></td></tr></table> ○ ○ 측량결과도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년 월 일 법인 또는 상호명 [인]				범 례	명 칭									지번·부호	면적(m²)								
범 례	명 칭																						
지번·부호	면적(m²)																						
비 고	이 측량성과도는 측량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측정점의 위치 현황도

전경 현황(사진)	
① 측정점 또는 경계점표지 위치(사진)	② 측정점 또는 경계점표지 위치(사진)
③ 측정점 또는 경계점표지 위치(사진)	④ 측정점 또는 경계점표지 위치(사진)

* 측정점 또는 경계점표지의, 위치 사진의 일부를 참고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 고 도

토지소재	
	방위

[유의사항]: 이 도면은 신청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의로 축소 또는 확대한 참고용 도면으로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토지 공시현황

토 지 소 재			지 번	지 목	면 적 (㎡) 4								
시·군·구	읍·면	동·리											
개별공시지가(원/㎡): 개별주택가격(원): (기준일: ○○년 ○월) (기준일: ○○년 ○월) 「토지이용계획 현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rowspan="2" style="width: 20%;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지역·지구 등 지정 여부</td> <td style="width: 30%; padding: 5px;">「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td> <td style="width: 50%;"></td> </tr> <tr> <td style="padding: 5px;">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 등</td> <td></td> </tr> <tr> <td colspan="2" style="padding: 5px;">「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td> <td></td> </tr> </table>						지역·지구 등 지정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 등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지역·지구 등 지정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 등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유의사항]: 여기에 적힌 사항은 참고사항이며,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에 방문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의 공적증명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적측량 수행자

성명: 직위(직급):	성명: 직위(직급):	성명: 직위(직급):
사무실 약도		
사무실 주소		
사무실 전화번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조의2(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u> <u>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u> <u>다.</u> 1. “<u>기지점</u>”이란 <u>기초측량에서</u> <u>는 국가기준점 또는 지적기준</u> <u>점을 말하고, 세부측량에서는</u> <u>지적기준점 또는 지적도·임</u> <u>야도상 필지를 구획하는 경계</u> <u>점과 상호 부합되는 지상의</u> <u>경계점을 말한다.</u> 2. “<u>망평균계산법</u>”이란 <u>지적삼</u> <u>각망을 활용하여 구하려는 지</u> <u>적삼각점 위치를 구하는 계산</u> <u>방법을 말한다.</u> 3. “<u>배각법</u>”이란 <u>하나의 각을 2</u> <u>회 이상 반복 관측하여 누적</u> <u>된 값을 평균하는 관측방법을</u> <u>말한다.</u> 4. “<u>방위각법</u>”이란 <u>자오선의 북</u> <u>을 기준으로 시계방향으로 각</u> <u>측선까지 이루는 각을 직접</u> <u>관측하는 방법을 말한다.</u> 5. “<u>도선법</u>”이란 <u>기지점에서 출</u> <u>발하여 각 변의 방향과 거리</u>		

를 순차적으로 관측하고 기지
점에 도착하도록 하여 측점의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
다.

6. “다각망도선법”이란 여러 개
의 도선을 결합한 형태로 구
성하여 각 도선에서 발생한
오차를 상호관련이 있는 도선
과의 관계를 종합하여 오차를
소거시키는 방법을 말한다.

7. “교회법”이란 기지점에서 미
지점의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
으로 방향선의 교차로 점의
위치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8. “방사법”이란 구하려는 지상
의 점들이 모두 보이는 위치
또는 기지점에 측판을 설치하
고 구하려는 지상의 점을 거
리와 각을 관측하여 위치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지적기준점표지의 설치·
관리 등)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적기준점표지의 설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제2조(지적기준점표지의 설치·
관리 등) ① -----

-----.

1. · 2. (생략) 3. 지적도근점표지의 점간거리는 <u>평균 50미터 이상 300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다각망도 선법에 따르는 경우에는 평균 500미터 이하로 한다.</u>	1. · 2. (현행과 같음) 3. ----- -- <u>500미터</u> ----- ----- . <u>다만, 위성측량 방법을 통하여 지적도근점표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점간거리를 제한하지 않을 수 있다.</u>
② · ③ (생략) 제3조(지적기준점성과의 관리 등)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적기준점성과의 관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지적삼각점성과는 <u>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u>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관리하고, 지적삼각보조점성과 및 지적도근점성과는 지적소관청이 관리할 것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조(지적기준점성과의 관리 등) ----- ----- -----. 1. ----- <u>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u> ----- ----- ----- ----- ---
2. · 3. (생략) 제4조(지적기준점성과표의 기록 · 관리 등) ① 제3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적삼각점성과를 관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적삼각점성과표에 기록	2. · 3. (현행과 같음) 제4조(지적기준점성과표의 기록 · 관리 등) ① ----- ----- ----- -----

• 관리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자오선수차(子午線收差)

5. ~ 7. (생략)

② 제3조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지적삼각보조점성과 및 지적도근점성과를 관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적삼각보조점성과표 및 지적도근점성과표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번호 및 위치의 약도

2. ~ 10. (생략)

③ (생략)

제5조(지적측량의 구분 등) ① 지적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적기준점을 정하기 위한 기초측량과, 1필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세부측량으로 구분한다.

-----.

1. ~ 3. (현행과 같음)

4. 자오선수차(평면직교좌표계에서 진북과 도북의 차이를 말한다)

5. ~ 7. (현행과 같음)

② -----

-----.

1. ----- 약도 또는 근경·원경 사진(항공영상을 포함한다)

2. ~ 10.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지적측량의 구분 등) ① --

----- 정하거나 경계와 면적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

② 지적측량은 평판(平板)측량, 전자평판측량, 경위의(經緯儀)측량, 전파기(電波機) 또는 광파기(光波機)측량, 사진측량 및 위성측량 등의 방법에 따른다.

제7조(지적측량의 방법 등)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 3. (생략)

4. 세부측량: 위성기준점, 통합기준점, 지적기준점 및 경계점을 기초로 하여 경위의측량방법, 평판측량방법, 위성측량방법 및 전자평판측량방법에 따른 것

② 위성측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③·④ (생략)

제8조(지적삼각점측량) ① (생략)

② 지적삼각점의 명칭은 측량지역이 소재하고 있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② -----

----- 사진측량, 위성측량 및 드론측량 -----.

제7조(지적측량의 방법 등) ① --

-----.

1. ~ 3. (현행과 같음)

4. -----

-- 평판측량방법, 전자평판측량방법, -----
--- 드론측량방법-----

② 위성측량 및 드론측량-----

-----.

③·④ (현행과 같음)

제8조(지적삼각점측량) ① (현행과 같음)

② -----
----- 특별시·광역시·도 -----

“시·도”라 한다)의 명칭 중 두 글자를 선택하고 시·도 단위로 일련번호를 붙여서 정한다.

③ 지적삼각점은 유심다각망(有心多角網)·삽입망(插入網)·사각망(四角網)·삼각쇄(三角鎖) 또는 삼변(三邊) 이상의 망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

③ 지적삼각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1. 유심다각망(기지 2점간의 거리와 방위각을 기준으로 오각형 이상의 폐다각형을 형성하여 삼각형의 계산을 하도록 설치하는 방법을 말한다)
2. 삽입망(기지 2변을 기준으로 하여 미지점을 설치하는 방법을 말한다)
3. 사각망(기지 2점간의 거리와 방위각을 기준으로 사각형의 폐다각형을 형성하여 삼각형의 계산을 하도록 설치하는 방법을 말한다)
4. 삼각쇄(삼각형이 단열로 연이어진 삼각망을 말한다)
5. 삼변이상의 망(각이 아닌 거리측정을 통하여 위치를 구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방법을

④ · ⑤ (생략) 제9조(지적삼각점측량의 관측 및 계산) ① (생략) ②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에 따른 지적삼각점의 관측과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 2. (생략) 3. 삼각형의 내각은 세 변의 평면거리에 따라 계산하며, <u>기지각</u>과의 차(差)에 관하여는 제1항제3호를 준용할 것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적삼각점을 관측하는 경우 연직각(鉛直角)의 관측 및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 2. (생략) 3. 2점의 <u>기지점(既知點)</u>에서 <u>소구점(所求點)</u>의 표고를 계산한 결과 그 교차가 0.05미터 + 0.05(S1 + S2)미터 이하일 때에는 그 평균치를 표고로 할 것. 이 경우 S1과 S2는 기지점에서 소구점까지의 평면거리	<u>말한다)</u>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9조(지적삼각점측량의 관측 및 계산)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 2. (현행과 같음) 3. ----- ----- <u>기지각(기지점 간의 각을 말한다. 이하 같다.)</u>----- ③ ----- ----- --(<u>시준선이 수평선과 이루는 각을 말한다. 이하 같다.</u>)----- -----. 1. · 2. (현행과 같음) 3. --- <u>기지점에서 소구점(기지점을 기준으로 위치를 구하고자 하는 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u>----- ----- ---. ----- -----
---	--

로서 킬로미터 단위로 표시한 수를 말한다.

④ (생략)

제14조(지적도근점의 각도관측을 할 때의 폐색오차의 허용범위 및 측각오차의 배분) ① (생략)

② 각도의 측정결과가 제1항에 따른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 그 오차의 배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배각법에 따르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측선장(測線長)에 반비례하여 각 측선의 관측각에 배분할 것

2. (생략)

제17조(측량준비 파일의 작성) ① 제18조제1항에 따라 평판측량 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할 때에는 지적도, 임야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측량준비 파일을 작성하여야 한다.

1. ~ 8. (생략)

②·③ (생략)

<신설>

-----.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지적도근점의 각도관측을 할 때의 폐색오차의 허용범위 및 측각오차의 배분)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배각법에 따르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측선장(測線長)에 반비례하여 각 측선의 관측각에 배분할 것

2. (현행과 같음)

제17조(측량준비도 및 측량준비파일의 작성) ① 지적측량수행자가 -----

----- 포함한 측량준비도 또는 -----.

1. ~ 8.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지적측량수행자가 도시·군 관리계획선을 측량하는 경우에

제18조(세부측량의 기준 및 방법 등) ① 평판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2. (생략)

3. 세부측량의 기준이 되는 위성기준점, 통합기준점, 삼각점,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및 기지점이 부족한 경우에는 측량상 필요한 위치에 보조점을 설치하여 활용할 것

4. 경계점은 기지점을 기준으로 하여 지상경계선과 도상경계선의 부합 여부를 현형법(現形法)·도상원호(圖上圓弧)교

는 도시·군관리계획선이 포함된 측량준비파일을 작성하여 시·군·구 도시계획부서 담당자의 서명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소관청에 측량준비파일 작성에 필요한 지적전산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8조(세부측량의 기준 및 방법 등) ① -----

-----.

1. 2. (현행과 같음)

3. 세부측량을 하려는 위치에 -----

없거나 사용이 어려운 -----

4. -----

-----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

회법·지상원호(地上圓弧)교

회법 또는 거리비교확인법 등

으로 확인하여 정할 것

가. ~ 라. (생략)

<신설>

<신설>

<신설>

가. ~ 라. (현행과 같음)

가. 현행법(지적공부에 등록

된 현황과 지상의 현황을

대조하여 비교적 변형이

되지 않은 토지경계선을

임의의 측점에서 측정한

후 도상경계와 지상경계의

부합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을 말한다)

나. 지상원호교회법(도상의 3

개 기지점에서부터 측량대

상 지점까지 거리를 측정

하여 측정된 기지점까지의

거리를 반지름으로 지상에

원호(圓弧)를 그려 교차점

을 생성하여 확인하는 방

법

다. 도상원호교회법(지상원호

교회법과 반대로 지상의

거리를 이용하여 도상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원호(圓

弧)를 교차시켜 지상점과

동일한 도상점을 찾아 확

<신 설>

② ~ ⑧ (생 략)

⑨ 경위의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2. (생 략)

3. 토지의 경계가 곡선인 경우에는 가급적 현재 상태와 다르게 되지 아니하도록 경계점을 측정하여 연결할 것. 이 경우 직선으로 연결하는 곡선의 중앙종거(中央縱距)의 길이는 5센티미터 이상 10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⑩ ~ ⑫ (생 략)

제19조(면적측정의 대상) ① 세부측량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여야 한다.

1. 지적공부의 복구·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 및 축척변

인하는 방법을 말한다)

라. 거리비교확인법(도상경계선과 지상경계선과의 거리를 비교하여 위치를 확인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 ~ ⑧ (현행과 같음)

⑨ -----

---.

1. 2. (현행과 같음)

3. -----

-----.

중앙종거(측선으로부터 원주상의 점과 직각으로 만나는 거리를 말한다) -----

-----.

⑩ ~ ⑫ (현행과 같음)

제19조(면적측정의 대상) 세부측량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여야 한다.

1. 지적공부의 복구·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 및 축척변

경을 하는 경우

2. 법 제84조에 따라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하는 경우

3.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인한 토지의 이동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결정하는 경우

4.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현황측량에 면적측정이 수반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3조제1항제4호의 경계복원측량과 영 제18조의 지적현황측량을 하는 경우에는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지 아니한다.

제20조(면적측정의 방법 등) ① 좌표면적계산법에 따른 면적측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생략)

2. 산출면적은 1천분의 1제곱미터까지 계산하여 10분의 1제곱미터 단위로 정할 것

가.·나. (생략)

<신설>

경을 하는 경우

2. 법 제84조에 따라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하는 경우

3. 지적확정측량을 하는 경우

4. 지적현황측량에 면적측정이 수반되는 경우

제20조(면적측정의 방법 등) ① -

--.

1. (현행과 같음)

2. 측정면적-----

가.·나. (현행과 같음)

가. 경위의측량방법을 사용한

경우: 100분의 1제곱미터

나. (생략)

<신설>

② 전자면적측정기에 따른 면적
측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
른다.

1. (생략)

2. 측정면적은 1천분의 1제곱미
터까지 계산하여 10분의 1제
곱미터 단위로 정할 것

③ 면적을 측정하는 경우 도곽
선의 길이에 0.5밀리미터 이상
의 신축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보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곽선
의 신축량 및 보정계수의 계산
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른
다.

1. 2. (생략)

④ (생략)

제22조(지적확정측량) ① (생략)

② 지적확정측량을 할 때에는
미리 규칙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도와 도면을 대조
하여 각 필지의 위치 등을 확인
하여야 한다.

나. (현행과 같음)

나. 전자평판측량방법을 사용

한 경우: 10분의 1제곱미터

② -----

---.

1. (현행과 같음)

2. -----
---- 측정하고, 산출면적은 -

③ 제2항에 따라 면적-----

-----.

--.

1. 2.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22조(지적확정측량) ① (현행과
같음)

② -----

--- 사업계획도 또는 설계도면
등 토지개발사업계획도와 지적
공부를 --.

③ (생략)

④ 법 제6조제1항의 기준에 따른 지적확정측량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24조(경계복원측량 기준 등) ① (생략)

② 경계복원측량에 따라 지표상에 복원할 토지의 경계점에는 규칙 제60조제2항에 따른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이 경계에 걸쳐 있거나 부득이 하여 경계점표지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제25조(지적현황측량) 영 제18조에 따른 지적현황측량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 지상건축물 등에 대한 측량은 지상, 지표 및 지하에 대한

③ (현행과 같음)

④ 지적확정측량 -----

제24조(경계복원측량 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규칙 제60조제4항-----

③ 경계복원측량을 할 때에는 기존의 지적측량 결과에 따라 작성된 측정점위치설명도에 표시된 경계점과 현장에 표시한 경계점과의 부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제25조(지적현황측량) -----

1. 지상건축물 및 구조물 -----

현황을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
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할
것

2. (생략)

<신설>

제26조(세부측량성과의 작성) ①
평판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한 경우 측량결과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작성된 경계복원측
량 또는 지적현황측량결과도와
지적도, 임야도의 도곽신축 차
이가 0.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에는 종전의 측량결과도에 함께
작성할 수 있다.

1. ~ 7. (생략)

<신설>

--

2. (현행과 같음)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
재된 계획선, 인가·허가를 받
은 분할 또는 등록전환 예정
선 및 토지개발사업·사회간
접자본건설 등의 사업계획도
상의 계획선에 대한 지적현황
측량은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
할 것

제26조(세부측량성과의 작성) ①

-----.

-----.

1. ~ 7. (현행과 같음)

8. 해당 필지 및 인접 필지에 대

②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한 경우 측량결과도 및 측량계산부에 그 성과를 적되, 측량결과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 8. (생략)

<신설>

③·④ (생략)

제27조(지적측량성과의 결정) ① 지적측량성과와 검사 성과의 연결교차가 다음 각 호의 허용범위 이내일 때에는 그 지적측량성과에 관하여 다른 입증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측량성과로 결정하여야 한다.

1. 지적삼각점: 0.20미터

2. 지적삼각보조점: 0.25미터

3. 지적도근점

가.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0.15미터

나. 그 밖의 지역: 0.25미터

4. 경계점

가.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

한 측량연혁

② -----

-----.

1. ~ 8. (현행과 같음)

9. 해당 필지 및 인접 필지에 대한 측량연혁

③·④ (현행과 같음)

제27조(지적측량성과의 결정) ① -----

-----.

1. ----- ±20센티미터

2. ----- ±25센티미터

3. -----

가. -----
- ±15센티미터

나. ----- ±25센티미터

4. ----

가. -----

역: <u>0.10미터</u> 나. 그 밖의 지역: <u>10분의 3M</u> <u>밀리미터</u> (M은 축척분모) ② (생략) 제28조(지적측량성과의 검사방법 등) ①·② (생략) <u><신설></u> ③ (생략)	- <u>±10센티미터</u> 나. ----- <u>±100분의 3</u> <u>M센티미터</u>(단, 전자평판 측량방법에 의한 경우 <u>±10</u> <u>0분의 2M센티미터</u>) ---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지적측량성과의 검사방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지적측량수행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9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적측량성과 검사 및 측량민원 조사를 위하여 지적소관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필지의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현황측량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u>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	--